

▣ 주주제안권 관련 법령

상 법	내 용
제 363 조의 2 (주주제안권)	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(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6 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(이하 '株主提案'이라 한다)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1. 30.> ② 제 1 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 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 363 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1. 30., 2014. 5. 20.> ③ 이사는 제 1 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,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09. 1. 30.>
제 542 조의 6 (소주주주권)	① 6 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 366 조(제 54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 467 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② 6 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천분의 10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 천분의 5)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 363 조의 2(제 54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③ 6 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만분의 50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 만분의 25)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385 조(제 415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 539 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④ 6 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만분의 10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 만분의 5)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466 조(제 54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⑤ 6 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만분의 50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 만분의 25)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402 조(제 54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⑥ 6 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 403 조(제 324 조, 제 415 조, 제 424 조의 2, 제 467 조의 2 및 제 54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⑦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. ⑧ 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 및 제 542 조의 7 제 2 항에서 "주식을 보유한 자"란 주식을 소유한 자,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, 2 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.
시행령 제 12 조 (주주제안의 거부)	제 363 조의 2 제 3 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주주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 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 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②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③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④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[법 제 542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상장회사(이하 "상장회사"라 한다)만 해당한다]인 경우 ⑤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